

「2023년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사업」 공고

「2023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사업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. 12. 8(금) 18:00까지 상시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3일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

사업 목적

- 미세먼지 다량 배출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설치 및 교체를 위한 자금을 장기·저리 대출 지원하여 국가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

2

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3년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사업
- (용자규모) 연간 1,200억 원
- (접수규모) 2,400억 원
- (접수방법)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- 접수처 :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(<https://www.konetic.or.kr/loan>)
 - ※ 우편 접수(서면) 및 이메일 접수 불가
- (신청자격) 「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」 제4조(지원대상) 해당 기업
 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시설
 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
 - ※ 「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」 제7조(지원 제외) 해당 기업제외

- (용자내용) 「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」 제6조(지원범위) 제5항 해당시설
 -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(NOx) 버너
 - 연소가스의 환원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 촉진하는 SCR (Selective Catalytic Reduction, 선택적 촉매 환원법) 설비
 - 환원제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여 환원시키는 SNCR(Selective None-Catalytic Reduction,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) 설비
 - 기타 미세먼지 발생·배출 저감 효과와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설비
 - 상기 시설개선에 대한 부대 장치와 설비, 설계, 컨설팅 비용 및 기초 토목공사와 기존 설비 철거 비용 포함 가능
 - ※ 토지매입비, 부가가치세, 임대·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하지 않음
- (용자금 사용기간) 용자 예비승인일 ~ 240일까지
- (대출금리) 환경부 분기별 고시금리(대출 시점 고정금리)
 - ※ 2023년 1분기 현재 3.63%

3

접수 일정

- (접수기간) 2023년 2월 13일 ~ 12월 8일(17시까지, 상시접수)

4

기타 사항

- (문의처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김민호 전임연구원(02-2284-1732)
- (유의사항)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「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」에 따름

- 붙임 1. 사업 안내서 1부.
 2.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 1부. 끝.